

심포지엄 主題論文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1999. 6. 29. (화)

韓 國 法 學 院

法學 심포지엄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座長 朴 禹 東 (변호사)

發 表 法學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玄 炳 哲 (한양대 법대 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法學界의 觀點에서

崔 大 權 (서울대 법대 교수 ·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장)

法曹實務界의 觀點에서

宋 基 方 (변호사)

○日時 : 1999. 6. 29.(火) 14시~18시

○場所 :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韓 國 法 學 院

(문의처 전화 : 752-7481)

목 차

法學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玄 炳 哲	(한양대 법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5
法學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崔 大 權	(서울대 법대 교수·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장)...	13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宋 基 方	(변호사).....	23

法學敎育의 現況과 問題點

玄 炳 哲

(한양대 법대 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法學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玄炳哲*

I. 序 言

최근 우리나라 대학은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4-5년 후에는 대학의 입학정원이 대입수험생의 수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반사회인도 대학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다.(학점은행제의 도입, 사회교육원의 확대 운영 등). 이렇게 대학은 벌써 대중화 시대를 넘어서 이미 개방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내용도 변화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으로 변화하고 있고, 둘째, 대학의 전공교육은 고등학교의 인문계, 자연계의 구분보다 약간 세분화된 정도로 교육하고 세부전공은 대학원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내용이 소위 학부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사회의 비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연구 성과는 어느 정도 세계에 통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에 대해 제기되는 이런 비판의 소리가 법과대학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법과대학만을 한정해서 살펴볼 때도 지난 5년 동안 교육환경은 많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대학의 강의실은 사범수험생들이 만원을 이루고 있고 시험과 관계없는 과목은 폐강의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대학에서 법학교육의 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하는 문제도 끝없이 논쟁되고 있다. 수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은 학부제의 틀속에서 법학의 전문성은 상실된 채 파행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때 금년 5월부터 정부에서 학사후 법학교육의 도입 (소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안을 제시함으로써 법학계는 이미 그 찬·반의견이 발표되고 있고 법실무 또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제시한 학사후 법학교육안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법학교육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한양대 법대 교수·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II. 法學教育의 現況

(1) 法學教育의 目的

법학교육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학교육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법학교육의 년한이나, 그 내용 및 교수방법, 그리고 교과과정등은 법학교육의 실천적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수들은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목적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법학교육은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전문 직업교육을 해야한다는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을 위한 일반교양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법학교육은 「법률적 교양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법률적 전문직에 필요한 근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제공하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이원적 식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목적의 불명확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법학교육 목적의 불명확성이 법학교육의 파행성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2) 法學科의 變遷過程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학교육의 목적이 불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각 대학교에는 법학과가 경쟁적으로 생겨났다. 1946. 가을에만 해도 우리 나라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만 있었던 것이 1947년부터는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각 대학교에서 경쟁적으로 법과대학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전국33개 학과와 1775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1998학년도에는 법학과가 68개교에 697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고, 또 법학부 12개교에 1370명의 신입생이 입학하고 있으며, 법정계 6개교에 710명이 입학하고 있다(교육부 자료). 이렇듯 법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4년 동안 이수해야 할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의 수는 대폭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1946년부터 1960년대까지 법과대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졸업학점수는 180학점이였다. 그러던 것이 1960-1975년 대부분의 대학이 160학점이상(대부분의 대학이 170학점의 졸업학점을 요구했다.)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부터 전국의 대학에 실험대학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법과대학의 학생들은 140학점 이상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은 2학점 3시간이나 3학점 4시간 등의 변칙적 방법으로 150학점 이상의 수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때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은 실험대학 제도는 법과대학에 적용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5년제 법과대학의 안(이미 1971년부터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주장된 안이다.)을 주장하는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 표시는 없이 199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대학의 학부제는 오히려 대학에서 학과는 폐지하고 학부에 편입되었다. 학생들은 법학과목중에서 4년 동안 36학점만 취득하면 법학사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4년 동안에 2개나 3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즉 법학사학위와 정치학사 학위를 동시 취득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법학사 정치학사 행정학사 학위로 취득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도하에서는 학부에서 법학의 전문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어있다.

(3) 法學教育과 司法試驗과의 關係

우리 나라 법학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따라서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의 관계는 각기 서로 다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법과대학이 전문적인 법조직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법적소양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법학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는 한 사법시험은 법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법학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변화할 때는 사법시험제도로 영향을 받게 되고 사법시험제도가 형태가 변화할 때는 법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법시험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서 법학교육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부수립후 1949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령에 의해 사법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때의 시험은 자격시험이었고, 응시자격은 학력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3년 4월 개정공포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사법시험령도 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사법시험응시자는 4년제대학의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나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리고 사법 및 행정시험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의 성격이 자격시험에서 채용시험으로 바뀌었다. 그후 1970년 5월 대통령령에 의해 사법시험 응시자의 학력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었고 1998.12. 사법시험령이 개정되면서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그 수를 일정 범위의 수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때마다 합격의 하한점수 및 기타 선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1995년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합의한 99년까지 법원 선발인원을 800으로 하고 2000년 및 그 이후에는 1000-2000명의 범위 내에서 늘리기로 한 합의를 파기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결국 사법시험은 법학교육을 받는 자와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그 시험의

성격은 자격시험이 아니고 채용시험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법시험제도는 법학교육과 전혀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法學教育의 當面問題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해 알 수 있듯이 법학교육의 당면문제는 첫째, 법학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없이 교육제도의 개선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 法學教育에 있어서 專門性的의 確保

현행 학부제의 제도하에서는 법학교육의 전문성은 확보될 수가 없게 되어있다. 전공필수과목의 지정은(년 동안 3과목만 인정)물론, 전체 이수학점도 4년 동안 36학점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학과의 존립을 부인한다. 따라서 법학과만 독립해서 법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도의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대학원에서 따로 교육하라는 것이다. 그 예로서 의학과 법학을 들고 있다. 법학의 경우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의학이 신체와 생명에 직접 관련학문인 것처럼 법학도 넓게는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범조영역자체가 국민의 재산과 신체 나아가서 생명에 직접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예리한 사실분석,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 모순 없고 논리적이며 질서 있는 표현력, 판단력, 그리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법과대학의 교육목적이라 할 때 현재의 학부제 체제 속에서 이런 교육이 가능한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벌써 학부제는 시행 3년째 접어들고 있다. 몇몇 큰 대학에서는 변칙적 방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듯 하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법학교육의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法學教育과 司法試驗과의 關係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시험은 법학교육과 전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법시험제도가 법학교육과 전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예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Law School제도 자체가 범조인 양성기관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제도와 분리된 범조인선발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미국도 100여년 전에는 Law School제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Law School을 나오지 않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독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법과대학의 최종 시험이 국가시험(Referenderexamen)이고 법과대학의 졸업장이 따로 없다.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법과대학졸업자에 한해서 사법시험응시자격을 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사나 약사처럼 일정한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자격을 주는 것이 자격시험의 본지에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변호사만은 예외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채용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선발하고 합격자수를 제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법과대학졸업자에 한해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사법시험도 자격시험의 본지에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법학교육은 정상화 될 수 있다. 사법시험이 법학교육과 무관하게 시행됨으로 해서 대학에서 강의는 사법시험과 관련된 과목만이 성황을 이루고 이와 관련 없는 과목은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사설 고시학원의 난립과 고시촌의 폐해는 이미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사법시험의 자격제한과 자격시험의 본지에 따른 사법시험의 시험제도의 변경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IV. 結 論

전술한 바와 같이 학부제에 의한 대학교육의 혼란으로부터 법학교육이 제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에서 전문성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학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면 의학과 마찬가지로 다른 학문분야와 차별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시험제도를 현행의 채용시험에서 자격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그 응시자격은 법대 졸업자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대학에 만연되어있는 수험법학의 폐해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안의 문제가 타결된 이후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법률가상은 무엇인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법학교육은 전문교육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法學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崔 大 權

(서울대 법대 교수·새교위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장)

法學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을 중심으로 -

崔大權*

법학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1995년에 사법개혁 과제의 하나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에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사법시험 정원만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였다. 사법시험의 정원만 확대되고 법학교육체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수요를 충족시키지도 못하며, 고시준비생의 양산으로 법학교육은 더욱더 황폐화되고 있다. 양적 확대만 있고,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문제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률시장 및 교육시장의 개방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새 정부에 들어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대학 학부제의 도입 등 대학교육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현실에서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학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교육이 대학학부제의 틀 안에 있는 것은 학부제 자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법조비리 사건의 발생 등으로 사법개혁의 요구가 다시 대두되었고, 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도적 정지작업 없이 사법시험 정원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대학 전체가 고시학원화하여 법학교육의 기능이 더욱 왜곡되고 사법연수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법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서울大 法大 教授·새교위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장

1) 여기서 전문교육이라 함은 전문직(Profession)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전문직의 특징으로는 그 직종을 수행하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업무의 성격상 사회의 건강이 좌우된다는 점, 따라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특히 강조된다는 점, 그리고 그 직종에 종사하려면 국가 또는 공적 성격을 지니는 공동체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지녀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직에 속하는 직역으로는 전통적으로 성직자, 의사, 교사, 법률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문교육이 그 자체로서 특정 영역에 대한 고도의 특화된 지식을 지니는 자라는 의미의 전문가(Specialist)를 배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전문교육으로서의 의학교육을 받은 자가 일정기간의 연수기간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법학교육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은 이미 지난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의 맥락 속에 놓여 있다.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육개혁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학부제의 도입, 대학원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보면 법학, 의학, 교육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은 다전공 복합학문체제를 지향하는 학부제 하에서의 학사과정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결과가 된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법학교육은 의학교육과 함께 대학원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작년 11월에 '학사 후 법학교육'의 구체적인 안을 연구하도록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에 의뢰하였다. 법학교육제도연구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수십년간의 법학교육개혁논의를 참조하면서 법학교육개선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지난 4월에는 2차에 걸친 전국 법과대학장 간담회를 통하여 학계의 여론을 청취하였다.

지난 5월에는 마련된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서울, 대구, 광주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여기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었다.

이 글에서는 법학교육제도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이에 비추어 본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새교위의 법학교육개선안인 '학사 후 법학교육'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I. 법학교육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현재의 법률가상이란 판검사에 충원되거나, 송무 중심의 소극적인 변호사에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가상은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며, 직업윤리의식이 문제되고 있다. 21세기로 전환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현재의 송무 중심의 소극적인 법률가상에서 경쟁력있고 책임있는 법률가상으로 법학교육목표의 전환이 요구된다.

법학교육제도개선이 목표로 하는 경쟁력있고 책임있는 법률가상이란, a)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세련된 인식, b)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제해결능력, c)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d) 투철한 서비스정신과 민주적 책임윤리 등을 갖춘 법률가들을 의미한다. 새로운 법률가상의 구현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법률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법률가, 직업윤리가 투철한 법률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첫째로 전문성 있는 법률가의 양성이란 민·형사 업무 이외에도 행정, 상사, 의료, 조세, 특허,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통상, 외교, 국제거래, 입법, 정책기획 등 다양한 전문영

역에 법률가들이 진출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말한다. 특히, 개개의 전문분야에 있어서 송무 이외의 변호사업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을 함양하기 위한 법학교육이 요구된다.

둘째로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국가간 협상이나 통상문제 등에서 주로 외국인 변호사나 외국(주로 미국)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국내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법률가가 국가간 협상이나 통상문제 등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WTO체제하에서의 법률서비스시장이 개방된다면, 개개의 법률가들이 외국의 법률가들과 경쟁해야 한다.

셋째로 직업윤리가 투철한 법률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법률가의 기본임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삼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내의 분쟁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법률가가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법률가가 내린 결론을 다른 사회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법률가에 대한 소명의식과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로, 인문교육과 전문지식에 대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학교육의 전제가 되는 인문교양교육이 강화되어야만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법학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법학지식 이외에도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사과정 수료 후에 법학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사법시험 제도가 대학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제도를 법학교육 개선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법률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에게만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법시험의 평가내용이나 방식도 법학교육개선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평가하기보다는 정규적인 법학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과 직업윤리의식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II. 현행 법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대학 법학교육의 문제점

사회가 고도로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법률가의 업무도 빠른 속도로 분화되고 또한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동함에 따라 법률가들은 자신이 교육받지 못한 전혀 새로운 유형의 법률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법률가는 더 이상 기존의 법을 해석하여 익숙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으로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다. 현대사회는 특화된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률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학교육제도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여 충분한 인문교양교육적 배경이 결여된 학생들에게 법률지식이 주입되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심도있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도구적인 지식만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법학외적인 전공지식이 전제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법률지식을 사회의 다양한 법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부족하게 된다. 이는 법학교육이 학사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모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명확한 교육목표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법률가양성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법률지식의 수요 양자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학교육제도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양자는 사법시험에 의하여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에서는 실무와 연계성을 지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과정이 사법시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법적 사고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법학교육이나 새로이 제기되는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법학교육은 정체성으로 상실하고 고시준비학원으로 변질되어 교육의 수준이 피상적인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2. 대안의 모색

이제까지 법학교육의 문제점은 여러 차원에 지적되어 왔고, 이미 몇몇 대안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제기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法學教育 問題點과 改善方案

첫째로 현행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강화하여 법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논의이다. 학사과정 법학교육의 강화론은 기존의 법학교육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지만,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학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강화하자는 방안은 대학학부제와 상치된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다. 학부제의 취지가 전공의 벽을 허물고, 전공에 필요한 학점수를 낮추어 사회의 수요에 맞는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인데,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강화하고 5년 내지 6년으로 교육연한을 연장하자는 것은 대학학부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또한 학사과정 법학교육의 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다양한 전공자가 법학교육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대학의 학사과정의 법학교육만 강화한다고 하면 '시험'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란 기존의 틀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강화하자는 방안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학사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밖에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바로 법학교육을 받는다는 점은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대학입시과정의 해소나 고등학교교육정상화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로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사법연수원의 교육을 강화하자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연수와 교육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연수는 해당기관의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족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표적인 교육전문기관이 대학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사법연수원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한 국가예산의 부담을 필요로 하며, 판검사가 되지 않고 변호사로 바로 진출하는 사법연수생의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판사의 교육이 아닌 일반 법률가의 양성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법부가 실무교육을 하는 이상, 필연적으로 판사중심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으며, 연수원 수료생의 3분의 2 이상이 변호사 또는 검사가 되는 현실에서 적절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이다. 사법시험이 법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법학교육체도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사법시험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개선만으로 법학교육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문제의 해결은 정규적인 교육의 개선으로 가능한 것이며,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은 법학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시험의 개선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응시자격을 법학교육을 받은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통한 법률가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률가양성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선된 법학교육내용과 사법시험 내용이

연계되어야 한다.

3. '학사 후 법학교육' 도입의 필요성

학사과정을 이수한 다양한 전공자를 법학교육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4년의 학사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학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중적인 법학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법학교육이 적절하다. '학사 후 법학교육'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법률가상을 전제로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학사 후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1차 시험 면제 등 사법시험 응시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새로운 법학교육 체제와 법률가 양성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이 대학원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법학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으며, 학부제의 장점도 발휘될 수 있다. 대학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며 고교교육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Ⅲ. '학사 후 법학교육'안의 주요내용

새교위의 법학교육개선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법학교육의 기본축을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에서 전문대학원법학교육으로 전환한다 ('학사 후 법학교육'의 도입). 법학교육제도 개선의 기본정신은 '전대학의 고시학원화'로 상징되는 현재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조적 사고력의 배양을 지향하는 교육 개혁의 근본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법률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2. '학사 후 법학교육' 기관의 명칭은 법학대학원(가칭)으로 하고 학사 후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법무박사 학위를 부여한다. 이는 학술학위인 법학박사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전문학위이다.

3. '학사 후 법학교육'으로 전환하는 기존의 학사과정의 법학교육 단위는 폐지한다.

하지만 이것이 이러한 대학에서 학사과정에서의 법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 전공영역과 연계되어 필요한 법학과목(예를 들어 정치외교학에서 헌법과 국제법, 행정학에서 행정법,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법, 경영학에서 상법 등)은 여전히 다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폐지되는 것은 학사과정의 법학교육 단위이지 법학교육 자체는 아닌 것이다.

4. 대학원체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학사과정 법학교육의 위상과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

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전문교육이 아닌 법학교육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학사과정 법학교육에서 이를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부제 하에서의 법학교육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타전공분야와 법학교육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법률사무소의 사무원, 법원·검찰 사무관, 교정·보호관찰·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기업의 법무담당, 법률구조기관 및 단체의 활동가, 사회복지제도 관련자, 시민단체(NGO) 활동가, 사회과목 교사, 변리사, 노동분야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특화된 법학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학부졸업 수준의 법전문가의 양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5. '학사 후 법학교육'의 설립대상은 설립기준을 충족한 기존의 학부법학교육기관이며, 단설 법학대학원 및 기존 법과대학의 콘소시엄 형태의 설립도 가능하다. 법학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은 사법시험합격자 수와 연계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6. 설립기준은 학생 수는 학년당 200인 이하이며,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은 1 : 12가 넘어야 하고, 전임교수의 최소인원은 학생규모와 상관없이 2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서 법학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7. 법학대학원의 입학자격은 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하고 입학시험은 [학부성적 + 외국어 + 사회경력 및 사회봉사실적 + 기타 법학대학원(가칭)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또한 같은 학교의 학부졸업자가 60%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의 비율이 최소한 30%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법학대학원의 입학시험에 법학과목을 두지 않는 것은 학사과정의 교육이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준비로 과행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비법학 전공자에게 30%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것은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에 일부 법학대학원에서 사법시험합격자 수에 연연하여 학부 법학전공자를 선호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나아가 같은 학교졸업자의 비율을 정한 것은 몇몇 대학이 우수한 자원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8. 법학대학원의 수업연한은 6학기 (3년)이며, 이수학점 수는 96학점 이상이다.

9. 교수요원양성을 위해서 법학대학원에 박사과정 및 전문학위과정과 학술학위과정을 연계하는 복합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게 한다.

10. 법학교육과 법률가선발의 연계를 위해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학사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및 법학대학원 졸업자(법무박사)로 제한한다. 법학대학원 졸업자에게 사법

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교육 이수자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게 될 것이다.

11. '학사 후 법학교육'의 주관기관으로 교육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칭)을 설치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대학원 설립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여 설립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법학대학원의 수와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법학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부 법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가 될 것이다.

IV. 글을 마치며

개혁이 혁명과 다른 것은 그것이 일방의 이해당사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포용하면서 공익에 접근하려 하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개혁이 혁명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교육개혁은 하나의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서 위로부터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개방하여 당사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핀 법학교육개선안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능한 최대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개선안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가양성제도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만큼 그 개선안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속하는 법률시장과 교육시장의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법률가양성제도의 개혁문제는 양자에 모두 걸리는 일이다. 법학교육개혁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宋 基 方
(변 호 사)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 법조실무계의 관점에서 —

변호사 宋基方

1. 문제의 제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법학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각계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 경위는 사법서비스의 개선 및 보다 공정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조개혁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법조개혁의 선행과제로서 법학교육개선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조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요구에 적절하고도 충분하게 부응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법조인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양(量)의 문제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질(質)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법학교육개선의 문제는 당연히 위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가장 먼저 염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일이 잘 되어나가지 못하면 제도를 없애 버리거나 뜯어 고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시행하여 온 기존의 제도는 이미 장단점이 노출되는 등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그 반성적 고려와 발전적 계획으로 개선하여 나가기 쉽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은 매우 모험적이며 불안하고 그 성과를 예측하기에 대단히 불명확한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없이 단기간에 작성된 즉흥적 발상에 기한 제도의 마련 및 시행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는 커녕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초래하여 옛 제도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그 동안 수차 여러 분야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먼저 현행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양성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틀의 범위내에서 개선방향을 검토함이 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생소한 신(新)제도의 도입은 장기간의 검토와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2. 법학교육의 목적

법학교육의 목적으로는, 일반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법학에 대한 지식의 함양을 위한 이론교육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의 두가지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당위론으로서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위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법조실무교육(전문법조인 양성)에 관하여 볼 때 현재 전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태를 크게 유형화해 보면, 제 1 유형은 기초적인 법학교육을 대학에서 이수한 후 이들 중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수용하여 훈련시키는 별도의 사법관양성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이고, 제 2 유형은 별도의 실무훈련교육기관이 없이 법과대학이 연장된 연한하에서 기초법학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실무가를 위한 일종의 임상교육까지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이 제 1 유형에 속하거나 그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가 제 2 유형의 대표적 예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Law School은 대학에서 일반 교양 교육을 이미 이수한 자 중에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입학시키기 때문에 일반 교양 과목을 가르쳐야 할 부담이 없이 3년간 각 법 분야에 대하여 이른바 case-method 교수 방식을 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법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배출하면 그 임무는 끝나고 Law School 졸업생 각자가 변호사시험을 치루어 합격한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서 미국에는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수용하여 별도로 법조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으므로 Law School 다닐때에 법조실무교육을 받는것으로서 Law School이 실무교육을 담당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무교육도 병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실무교육은 법관을 양성함에 일차적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법학교육의 좌표를 논함에 있어 법조실무교육에 관한 선진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법과대학이 법학교육은 물론 법조실무교육까지 일원적으로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은 법학에 관한 기초이론교육만을 실시하고 이들 중에서 법조인이 되고자하는 자를 시험을 통하여 선발한 후에 별도의 실무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실무훈련을 전담토록 할 것이냐라는 두 유형에 귀착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학사후 법학교육의 문제점

제도를 개혁하여 올바른 법학교육을 실시하려고 기존 법과대학의 이수연한을 연장한다던가 학사후 법학교육기관(법학전문대학원)을 창설한다던가 하는 것은, 연장된 기간에서나 신설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기초교육은 물론 법조실무교육까지도 겸하여 실시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인적 물적시설이 법학기초이론과 법조실무훈련을 겸한 법률교육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길고도 긴 교육기간을 이수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는 비교적 사무적인 실력검정시험(한국의 의사국가고시, 미국의 Bar Exam)을 거쳐서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이 옳고 판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여야 되며 판검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훈련기관은 존치할 필요가 없으며, 법학교육은 그 교육내용이 미국식으로 실무중심으로 개편되어 버리기 때문에 법학기초이론에 관한 대학원교육은 상대적으로 쇠퇴기의 길을 걷게 되어 법학이라는 고유의 학문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되면서도 기존의 학부제 법학과는 존속하며 경쟁율이 심한 사법시험 1차 2차는 그대로 시행하고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판,검사 변호사를 양성 교육하는 법조실무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이 그대로 존치된다면, 그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 만들 필요없이 기존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고도 위험성이 없는 개선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4. 정책의 일관성 유지요망

1995년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 간의 이른바 “법조개혁논의”결과 같은해 12. 1.자 합의에 의하여, 법률가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등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당시(1995년) 법조개혁논의 과정에서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충분히 논의 검토되어 논증된 것이고, 1996년에 교육부에 설치된 법학교육위원회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안을 스스로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원이 개편되어 1997년도 과정부터 학기제, 학점제, 전문분야교육강화 등 대학원시스템의 요소를 상당부분 커리큘럼에 흡수시켜 이제 와서 별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도의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그간의 정책입안결정과정에서 비추어 보면 이제 또다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논의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비생산적 비경제적이며 죽었던 망령이 다시 살아온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법학교육개혁안

(1) 4년제 학부의 존치 및 법학교육강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4가지 단계로 보아 (1) 법대 학부교육 (2) 사법시험 (3) 전문법조 양성실무연수 (4) 계속교육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단계인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보면 외국의 성문법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듯이 4년제 학부(대학)에서는 중요한 법 분야에 관한 이론과 개념 원리 등을 가르치고 그후에 사법연수원과 같은 전문법조양성기관에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제도는 법률가로서의 단계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대학졸업생의 진로중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서의 진출만 생산적이고 다른 길로의 진출은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기업체나 중앙 및 지방행정부처, 금융기관, 연구소 기타 법률유사직종에서 법과대학졸업생을 필요로 하였고 그들은 위 여러분야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오로지 전문법조인 양성의 목적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다전공 복합 학문체제가 도입되어 법대 입학생은 법학전공의 최소학점인 36학점만 취득하면 법학사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부전공인 경우는 24학점)

즉 법학전공교육이 현저히 약화되어 필요하고도 충실한 이론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과대학은 4년제 학부에서의 법학이론교육을 강화하여 법학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유사법률직업군으로 활약함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꼭 전문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력과 자질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와와의 연계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이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에 달하고 그 중 소위 고시촌이라는 곳에 입소하여 시험에 메달리고 있는 인구가 수만명이며 전국의 법학과가 84개이며 매년 7,500명 가량의 법학과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착실하게 공부하고 또 운이 좋아 일단 합격만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며 자수성가 하는데에는 고시가 제일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여 사법시험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법학교육의 경시풍조를 낳게 되고 법학연구와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나아가 고시에 합격한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인격형성과정이 결여되고 시험벌레로서의 경력밖에 없는자여서 결국 법조비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는 비난이 많 습니다.

즉 치열한 고시전쟁에서는 법조인으로서의 교양을 쌓는다면 인생을 수련한다는 정상 적인 법학교육의 목적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고시수험생들은 고시해당과목만 집중적으로 수강하고 고시학원에 가서 요 점정리 수강을 하고(학문적인 교수의 강의는 피함) 법적 사고력(legal mind)을 키우기 보다는 시험점수 획득을 위한 공부만 해 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이나 교수진들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많이 이룩한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고 시합격자 배출에 기여를 많이 한 교수가 훌륭한 교수라고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문화속에서 공부한 자들이 용케 고시에 합격한다 해도 그들은 법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시험벌레에 불과한 자들로서, 이들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자질 있는 법조인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한 훌륭한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교양과 건전한 판단력, 일반적 식견을 구비하고 국민들의 애환을 이해할 수 있는 법조전문가가 되기는 힘들것입니다.

또한 현행제도상 법학과 출신이 아닌 비법학과 출신이나 심지어 독학자도 고시를 칠 수 있게 되어 있어 고시열풍은 점점 세계 불어 도저히 잠잘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 실시된 제30회 사법시험의 경우 20,755명이 응시하여 700명이 합격하였으 니 2만여명이 낙방하여 낭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 그러므로 첫째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법학전공자로서 3년이상 수료자 또는 법학사학 위 취득자에 한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학전공자는 법학과에 3학년으로 학사 편입하여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후부터 응시 자격을 갖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격제한(대학 3년 수료이후 응시가능)은 종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독학자, 비법학전공자, 법학과 3년수료미만자들에게는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도를 마련하면 평등권위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고시열풍으로 인한 황폐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대학 4년 졸업후 법학사자격취득후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졸업후 1회만 응시가 가능하고 곧 군입대를 하거나 병역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일반대학원에 형식적으로 입학 등록해 놓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므로 법과대학 3년 수료후로 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 사법시험 1차시험 면제제도 신설

4년제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학년 평균 B학점 이상(또는 별도의 기준설정)을 취득한 자에게는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학부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출석 및 비고시과목에 대한 수강율을 높이고 교수들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며 전인교육 및 일반교양의 함양에 기여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고 대학의 고시학원화를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과목(고시과목 + 비고시과목)을 대학에서 충실히 우수하게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상의 혜택을 부여하므로써 대학의 기능을 찾아 주고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며 법조인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격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 사법시험 2차의 출제방법 및 3차(면접)시험제도 운영개선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암기식 시험준비용 교육이 아니라 legal mind를 형성하는 자질을 함양시키고 경험칙 논리칙에 부합하는 증거판단 및 그에 기한 사실인정능력 법적판단력을 갖추는 기본적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며 따라서 사법시험 2차 주관식 문제는 암기식 논술형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례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출제하여 강의실에서 제대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지 아니한 응시생은 사법시험 2차문제를 처리해 나가기 어렵도록 출제를 하여 대학강의와 사법시험 문제를 연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3차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아무리 2차시험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시켜서는 않될 것입니다.

현재는 사법시험 2차 성적순으로 합격자 숫자 사정(査定)에 의하여 합격을 결정하고 있어 3차(면접)시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사법연수원에서의 법조실무교육개선

현재의 서초동 사법연수원은 1982년에 준공된 건평 6,481평의 규모로서 연수생 300명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을 기준으로 마련되었던바, 사법연수원 청사 이전계획에 의하면 고양시 장항동에 대지면적 25,000여평에 연건축면적 17,000평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10층 본관등 4개동 건물의 규모로 1998년에 착공하여 2001년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시설과 설비는 충분히 여유 있는 규모이며 현대적 첨단 교육환경하에 국제화에 대비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연수원의 수습과목은 별첨표와 같이 숙련된 실무법조인 양성, 국제적 무한경쟁에서 앞서 나갈수 있는 전문법조인 양성, 전인격을 갖추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봉사할수 있는 공익법조인 양성, 법의지배를 실현할 민주적지도자 양성에 역점을 두고 2년간의 이수과정을 이론 및 실무와 법조 윤리등으로 나누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수습과목은 변화하는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좀더 다양화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론중심 보다는 사례중심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상황과 같은 모의법정운영 훈련을 수시로 터득토록하여 연수생들이 실제와 같은 법정활동을 수습토록 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로 배출되는 연수생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므로 변호사실무교육 및 훈련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적 물적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조윤리문제는 사법연수생시절 부터 몸에 베고 뇌리에 박히도록 윤리교육을 더욱강화하고 연수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엄한 징계등 처벌을 하여 강한 윤리의식을 갖추게 하여 기성법조인이 된 후 비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교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각계(학계, 시민단체, 언론단체)가 참여하여 수시로 훌륭한 의견을 반영시켜 법조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이 그 목적을 훌륭히 달성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다음 여기서 부언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호사가 국민에게 훌륭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도 높은 법조윤리를 지키며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어 변호사의 소임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첫째 변호사 단체의 회원변호사에 대한 계속연수교육이 의무적으로 강행되어야 하고 둘째 변호사단체가 법정 단체가 되어 가입이 의무화되고 변호사협회가 정한 여러 규정을 회원 변호사가 준수할 의무를 부담시켜 위반시에는 징계조치 등을 내리므로써 변호사들이 법

法學教育 改善의 方向

조비리를 범하여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함이 옳을 것입니다.

사법서비스개선 및 공정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로서는 학사후 법학교육제도 도입의 문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면에서 법조전체를 두루 살펴 피며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9기 1, 2학기 수습과목

수 습 분 야		수 습 과 목(팔호안은 학점)		
		1학기	2학기	
법률이론	일반법	국제계약실무 (1) 강제집행 (1) 행정소송, 가사소송, 헌법소송 중 택일 (1)	보전소송 (1)	
	전문 및 특별법	부동산소송/증권거래법/형사정책/형사증거법, 기본권연구, 조세법총론, 해고와 임금, 공정거래법, 특허법, WTO통상법, 국제거래총론, 행정구제법 중 택일 (2)	손해배상소송/도산처리법/회사법/금융거래법, 국제형사법/신종범죄론/특수수사론, 통치구조연구/언론과 헌법/성의 평등과 여성,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소득세법·상속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국제계약법/국제소송·중재, 미국·EU통상법, 국제인권법, 급부행정, 노동특수이론 및 산업재해 중 택 2 (2)	
	외국법		미국헌법, 미국민사법, 미국형사법, 독일법, 프랑스법, EU법, 일본법, 중국법 중 택 1 (1)	
법률실무	원내 교육	변호사실무	변호사실무(민사, 형사) I (2)	변호사실무(민사, 형사) II (2)
		민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I (3)	민사재판 실무 II (2)
		형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I (2)	형사재판 실무 II (2)
		검찰실무	검찰실무 I (2)	검찰실무 II (2)
	실무수습		변호사실무수습, 법원실무수습, 검찰실무수습 중 택 1(3)	
법조윤리	법조론(1) 사회봉사연수(3)	법조윤리론 (1)		
법학인접분야	수사절차론(1)	회계학, ADR, 법의학, 법심리학, 사법제도론, 법률영어 중 택 1(1)		
일반교양 및 기타 사회발전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야	법률문장론, 대인화법, 한국미술, 서양음악, 견학, 시청각등(비학점)	각종 견학, 특강 및 시청각교육등(비학점)		

제29기 수습분야별 및 학기별 이수 학점

수 습 분 야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합계	
법률이론	일반법	3	1			4	
	전문 및 특별법	2	4		2(세미나) 3(논문)	11	
	외국법		1			1	
법률실무	원내교육	변호사실무	2	2		4	8
		민사재판실무	3	2		4	9
		형사재판실무	2	2		4	8
		검찰실무	2	2		4	8
	실무수습	변호사실무수습		3	6		9
		법원실무수습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 중 1)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 중 2)		
		검찰실무수습					
		전문분야실무수습			3		3
법조윤리	법조윤리이론	1	1		1	3	
	사회봉사연수	3				3	
법학인접분야		1	1			2	
교 수 지 도		1	1	1	1	4	
		20	20	10	23	73	

